

의안번호	제724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2일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4
----------	-----

발의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발의자 : 김정일·이정범·유상용

김성대·박병천·박봉순

박진희 의원

1.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통일교육주간 운영과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통일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안 제1조)
- 나. 통일교육 기본방향 규정 신설(안 제3조)
- 다. 통일교육진흥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9조)
- 라. 통일교육주간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마.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첨부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시민과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정립

2.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의지 함양

3. 통일대비역량 함양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진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청 통일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일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 개발·활용 방안
3.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4. 통일교육 연구회 및 학생동아리 운영 방안
5. 통일교육 교직원연수 방안
6.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통일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3. 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협의

4.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일교육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일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원 또는 공무원

2.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의 대표

4.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통일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에 캠페인, 문화·체육 행사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추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및 행사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교육감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통일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19998호, 2024. 1. 16., 타법개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9.>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통일교육진흥위원회 운영

2. 비용 발생 요인

- 통일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연구회 운영
-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 운영
- 통일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 통일교육진흥위원회 운영

3. 관련조문

- 안 제5조(계획 수립·시행)
- 안 제6조(통일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산출내역의 단가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의 운영비·자산취득비의 기준단가로 하며 통일교육 관련 자료개발, 현장체험학습 운영, 연구회 및 학생동아리 운영, 통일교육진흥위원회 운영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추계함
(※ 향후 통일교육 진흥 활성화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통일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연구회 운영	3,730	3,730	3,730	3,730	3,730	18,650
현장체험학습 운영	45,000	45,000	45,000	48,000	52,500	235,500
학생동아리 운영	8,000	8,000	8,000	10,000	12,000	46,000
통일교육진흥위원회 운영	1,440	2,880	2,880	2,880	2,880	12,960
계	58,170	59,610	59,610	64,610	71,110	313,110

- 통일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연구회 운영: 37,300천원
- 현장체험학습 운영: 1,500천원×운영학교 수
(2024년~2026년: 30개교, 2027년: 32개교, 2028년: 35개교)
- 학생동아리 운영: 10,000천원×운영학교 수
(2024년~2026년: 8개교, 2027년: 10개교, 2028년: 12개교)
- 통일교육진흥위원회 운영: 120천원×12명
(2024년: 연 1회, 2025년 이후: 연 2회)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58,170	59,610	59,610	64,610	71,110	313,110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58,170	59,610	59,610	64,610	71,110	313,110	
재원 조달	58,170	59,610	59,610	64,610	71,110	313,11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58,170	59,610	59,610	64,610	71,110	313,11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